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
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학습보조비등의 환수 시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를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가산하는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
내야 할 학습보조비등에 분할납부 결정을 한 날의 제2항제1호에 따른
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,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
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.

제61조의2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1조의2(학습보조비 등의 환수) ① ~ ⑤ (생 략) ⑥ <u>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 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 제7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 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학습보 조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 다.</u> 1. <u>분할납부 이자: 분할납부 기 간 동안 내야 할 학습보조비 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 율을 곱하여 산정</u> 2. <u>회당 분할납부금: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 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</u> ⑦ (생 략)	제61조의2(학습보조비 등의 환수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 우 가산하는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학습보조비 등에 분할납부 결정을 한 날의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적 용하여 산정하며, 회당 분할납 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 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 으로 한다. ----- --.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⑦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420